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 2019.11.15

개정 2025.02.17

제1조(목적)

이 기준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오하자산운용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,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(이하 “업규정”이라 한다)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(이하 “업규정 시행세칙”이라 한다)과 집합투자계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수수료의 구분) 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으로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로 구분한다. 운용보수는 운용기간동안 받는 일정한 금전을 말하고, 성과보수는 법 제86조, 법 시행령 제88조 및 업규정 제4-65조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산정된 방식에 따라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나. 판매회사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다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마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바. 성과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며 미리 정하여진 산정 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 (법 제86조, 동법 시행령 제88조,

업규정 제4-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능)

2. 수수료 :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,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 - 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.
 - 다.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수수료(성과수수료 포함) 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.

제4조(수수료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행위,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수료 부과절차)

- ①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, 규모,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- ④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및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,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과 관련된 부과절차는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⑤ 투자일임수수료 및 투자자문수수료의 경우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는 투자자문(일임) 계약서에 따른다.

제6조(설명의무)

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

하여야 한다.

제7조(공시 및 통보)

- ①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수를 부과하는 경우 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그 시기, 금액 등 투자일임보수의 부과에 관련한 사항을 투자일임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